

인천지방법원 2020. 9. 25 선고 2020가합5063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현 담당변호사 이혜미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0. 8. 28.

판결 선고2020. 9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'대금'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'대상 부동산'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8. 26.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 중 각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 판결)

재판장판사고연금

판사이아영

판사강민균

별지